

# 학습역량지원센터 규정

제정 2023.03.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습역량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과 기능)** ① 센터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서 도출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발된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예·결산 보고
2.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계획수립 및 운영
3.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통계분석 및 기록물 관리
4. 학습역량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홍보 및 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5. 센터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교육
6. 센터 소관 위원회 운영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8.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9. 학습역량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3조 (학습역량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학습역량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역량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 학습역량지원센터 소속 전임교수, 교무처, 기획처, 학생처, 입학처, 교육혁신처의 책임급 실무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1인의 간사를 둔다.
3.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제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
3.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습역량지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규정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교수학습센터 규정은 폐지한다.